



제주여성가족연구원 – 한국사회과학자료원
자료공유협약서

제주여성가족연구원과 서울대 아시아연구소 한국사회과학자료원(이하 KOSSDA)은 연구 자료의 공유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사항을 협약한다.

제1조(협약의 목적) 이 협약은 제주여성가족연구원이 연구를 위해 수집한 원자료(양적 및 질적 자료)와 연구의 결과물로 산출한 문헌자료(연구보고서)를 KOSSDA에 기탁하고 KOSSDA는 기탁 받은 자료를 연구와 교육에 활용할 수 있게 보급하는 등 연구 자료의 공유에 관한 사항을 협약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.

제2조(협약의 내용) ① 제주여성가족연구원은 동 기관이 수집, 산출한 자료를 KOSSDA에 최대한 기탁한다.
② 제주여성가족연구원은 기탁한 자료의 공개를 일정 기간 동안 유보할 수 있다.
③ 제주여성가족연구원이 기탁한 자료의 저작권은 동 기관이 소유한다.
④ KOSSDA는 제주여성가족연구원이 기탁한 자료를 정리, 보존, 홍보하고 최대한 보급할 의무가 있다.
⑤ KOSSDA는 제주여성가족연구원이 기탁한 자료가 저술에 이용될 경우 자료 출처를 명시하게 할 책임이 있다.
⑥ 제주여성가족연구원과 KOSSDA는 자료 공유와 관련하여 상호 필요한 협력과 지원을 최대한 제공하는 데 노력한다.
⑦ 제주여성가족연구원과 KOSSDA는 이 협약 체결에 따른 업무 협조를 위하여 각 기관의 실무책임자 1명을 지정한다.

제3조(협약 기간) 이 협약의 기간은 협약 일로부터 2년으로 정한다.

제4조(협약의 종료와 갱신) ① 이 협약은 기간 만료 후 협약 당사자에 의한 협약 종료 의사 표시와 동시에 종료된다.
② 협약 기간 만료 후에도 협약 당사자의 협약 종료 의사 표시가 없는 경우 협약은 1년 단위로 자동 갱신된다.

제5조(협약 내용과 기간의 변경) 이 협약의 내용과 기간은 협약 당사자 간 합의에 의해 변경할 수 있으며, 변경된 내용은 별도의 문서로 작성하여 협약서에 첨부해야 한다.

제6조(기타 사항) 이 협약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 법령이나 관례에 따른다.

제7조(협약의 효력) 이 협약은 협약 기관의 대표자가 협약서에 서명한 날로부터 발효한다.

2020년 11월 13일

제주여성가족연구원

원장 민무숙

민무숙
(서명)

서울대 아시아연구소
한국사회과학자료원

원장 이재열

이재열
(서명)